

• 소통의 연수 • 통합의 연수 • 안전한 연수



연수구보

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1440호 2024. 4. 22.(월)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-659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입법예고) 1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-660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
정조례안 입법예고) 9

회							
람							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. 4. 19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제정이유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「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 미정비로 2023년 市 종합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(안 제12조의3)
 - 노상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획 기준 신설
- 용어 및 맞춤법 등 정비
 - 안 제1조, 안 제5조제3호, 안 제19조제1항제3호~제4호, 제19조제2항, 제10조제1항”, 제23조제1항

3. 의견제출

-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**2024년 5월 13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(참조 : 교통행정과장)에게 서면, 전화, 팩스,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 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제출처 : (우 21967)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연수구청 교통행정과)
전 화 : 032-749-8752 / FAX : 032-749-8749
이메일 : chumsin@korea.kr

-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 (구체적으로)
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안)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- 참 고

가.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”을 “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호 본문 중 “공영 주차장”을 “공영주차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
2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
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장소 및 기준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제19조제1항제3호 중 “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를 “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“조사”를 “조사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영 제10조제1항”을 “「주차장법 시행

령」 제1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영 제17조”를 “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8개월 이내에 이 조례 제12조의3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둘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,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「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<u>공영 주차장</u>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 다만,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</u> <u>시행규칙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 ----- ----- <u>공영주차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
4. ~ 17. (생략)

제12조의3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)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)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

4. ~ 17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3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)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
2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
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장소 및 기준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) ① -----

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

1. 2. (생략)

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.

4.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(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)로 하되,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,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8조-----

-----.

4.-----

----- 조사,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.

② ----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-----

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4월 19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자치법규명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

2. 개정이유

-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,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(안 제2조제2항)
-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과장급 이상 관리직으로 규정(안 제2조제3항)
-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 지급심의(안 제6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0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수구청장(세무2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: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(단체)은 연수구 세무2과(☎749-75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주 소: (21967)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연수구청 세무2과
- 연락처: ☎ 749-7531, FAX 749-7459
- E - mail : mjh671@korea.kr
- 연수구 홈페이지(www.yeonsu.go.kr/ 입법예고)

4. 참고사항

- 일부개정조례안
- 신·구조문 대비표

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제54조에서 정한” 을 “제54조에 따라 지속적인 납부독려,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” 로 하고,
같은 항 제5호 중 “4호” 를 “제4호까지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제1호 중 “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” 를 “제6조에 따른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” 로 한다.

② 제1항제4호 중 “특별한 노력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
 - 가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
 - 나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
 - 다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
 - 라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른 고액·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
 - 마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
 - 바. 「지방세법」 제131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5조에 따른

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

사.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

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(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)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과년도”를 각각 “지난연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2항”을 “제2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“제2조제2항제1호”를 “제2조제4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2조제2항제2호”를 “제2조제4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조제3항”을 “제2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지급심의 등)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
1.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
2.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
3.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
4.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 중 “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전심사의결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사전심사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5호서식]

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(개인별)

수신 :

참조 :

(단위 : 원)

구 분	건 수	징 수 액			포 상 금
		합 계	본 세	납부지연 가 산 세	
합 계					
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					
지난연도 체납액 징수	소 계				
	1 년 차				
	2 년 차				
	3 년 차 이 상				
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					

붙임 :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[별지 제6호서식]

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(총괄)

수신 :

참조 :

발신 : (인)

(단위 : 원)

구 분	건 수	징 수 액			포 상 금
		합 계	본 세	납부지연 가 산 세	
합 계					
탈루세액 등 제보					
체납자 은닉재산 신고					
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					
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	소 계				
	1 년 차				
	2 년 차				
	3 년 차 이 상				
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					

[별지 제10호서식]

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징수 월일	징 수 자		징 수 내 역					체 납 자		특별징수 공적사유	포상 금액	포상금 지급일	담당 확인
	직급	성명	구분	년도 납기	과세 번호	세 목	징수액	성 명	생년월일				

※ “구분” 란에는 지난연도 체납액 경과연수(1년차, 2년차, 3년차 이상)를 표시

<신 설>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

가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

나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

다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

라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른 고액·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

마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

바. 「지방세법」 제131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

사.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

<신 설>

② 제1항제5호에 따른 “특별한 공적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,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자

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3조(지급기준)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(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)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-----

-----.

1. -----

제6조에 따른 연수구 지방세 심의위원회

2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3조(지급기준) 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

가.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
나.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

다.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
4.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

가.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. 다만,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3. -----

가. 지난연도 -----

나. 지난연도 -----

다. 지난연도 -----

4. 제2조제4항 -----

가. 제2조제4항제1호 -----

나.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수탁기관 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 부금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

② 제2조제3항에 따른 세외수 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할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 를 준용한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포상금은 위원회의 사전심사·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 장은 세무업무 담당 국장이 되 고, 위원은 기획예산과장, 재무 회계과장, 세무1과장, 세무2과 장으로 하며, 간사와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와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

- 1. ~ 4. (생략)

나. 제2조제4항제2호-----

② 제2조제5항-----

-----.

제6조(지급심의 등)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7 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 회”라 한다)의 심사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<삭제>

② -----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
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
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
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
출석할 수 없다.

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
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
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
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

제10조(대장 비치) 세입금 부과
· 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
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
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
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
필요한 사항을 기록·정리하여
야 한다.

5. -- 밖에 -----

<삭 제>

<삭 제>

제10조(대장 비치) -----

----- 별지
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
식-----

-----.